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8. 30.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8. 16. 홍지광 의원 외 9인
- 나. 회부일자: 2024. 8. 19.
- 다. 상정일자: 제270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4. 8. 30.)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홍지광 의원】

###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공공자금 이자수익 확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적용 범위 및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
- 라. 공공자금 운용 원칙 및 평가지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 마. 금고운용보고서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 및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9조)

### 3. 검토보고(전문위원 권하나)

#### 가. 제정 목적

- 동 조례 제정안은 2024년 8월 16일 홍지광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포구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도모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구 금고의 경우 ‘공공예금’과 ‘정기예금’으로 자금 성격에 따라 공공자금을 예치할 수 있고,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상시 예치 가능한 ‘유휴자금’을 적극 발굴 및 운용을 통해 이 수익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 구 금고 지정 현황 >

금 고 명	회 계 명
우리은행 마포구청점	일반회계 (1), 특별회계 (5), 기금(15)

**< 2023회계연도 결산 상 기금 보관 현황 >**

(단위: 원)

연번	기금명	공금예금	정기예금
1	남북교류협력기금	76,580,730	568,966,187
2	재난관리기금	31,603,756	6,739,219,781
3	자활기금	20,908,107	1,631,037,123
4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492,251,489	1,570,000,000
5	양성평등기금	80,301,501	2,123,000,000
6	중소기업육성기금	2,659,069,066	1,581,052,682
7	공유재산관리기금	4,642,431,091	25,000,000,000
8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171,446,991	750,000,000
9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454,469,083	600,000,000
10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4,199,556,502	4,081,778,150
11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405,937,282	520,000,000
12	옥외광고발전기금	420,891,715	817,703,811
13	도로굴착복구기금	1,026,806,308	1,800,000,000
14	식품진흥기금	715,296,983	2,000,000,000
1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5,420,314,000

- 우리 구의 경우 국·시비 재정의존도가 높고 복지재원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나 기금, 산하기관의 유휴자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방안을 통해 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나. 조문 검토

- 본 제정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본칙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적용 범위(안 제4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안 제5조), 공공자금의 운용 원칙 및 평가지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금고운용보고서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등을 규정하였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구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자금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규정함.
- 안 제2조는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1)에 따라 규정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정의하고 있고, “금고”란 「지방회계법」 2)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의

1) 「지방자치법」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

- 2)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정의함.

- 안 제3조는 「지방재정법」 제3조<sup>3)</sup>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유휴자금 운용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는 구청장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공공자금 운용 원칙과 공공자금의 운용 평가지수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8조는 금고가 구청장에게 반기별 보고하는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행정 감시 및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여 공공성, 안전성 및 수익성을 제고 할 것으로 기대되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9조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기관 자문 규정을 명시하였음.

#### 다. 종합 검토 결과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마포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통칭하여 ‘공공자금’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공자금의 체계성을 확립하여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향후 이자 수입의 극대화를 통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등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sup>4)</sup>
- 그리고, 동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4)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16곳(2023. 7. 3. 전남 해남군 최초 제정)이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강북구에서 의원 발의로 2024. 6. 28. 공포함.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재정자금의 통합운동) ① 통합재정자금은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경우에는 통합재정자금의 운용에 준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운동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출관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운동기록부를 비치하여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 가용자금의 규모와 가용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⑤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이 발생하면 통합지출관 관리계좌에 이체하여 통합지출관이 유휴자금의 운용관리를 총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통합지출관은 자금 수입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용 일정에 따라 여유자금을 구분하고, 여유자금을 정기에금으로 가입하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에금을 해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입자금의 세입, 과오납 금액 및 세출자금의 배정액, 환수액, 지출액 및 반납액, 전입·전출금액 등의 일일현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금고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금현황 파악 및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